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관련
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판

2022. 2. 14.



충청방역대책본부

주요 변경사항

[지침 3판은 전면개정 지침으로 전후대비표 생략]

구분	종전		현행	비고 (사유 등)
지원대상	• 입원·격리통지를 받은 사람	⇔	• 변동없음	
지원단위	• 입원·격리자의 가구	⇔	• 변동없음	
지원인원	•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	⇔	•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·격리된 가구원	실제 격리 대상자 지원
지원금액	•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	⇔	• 변동없음 - 단, 가구원수는 격리가구원 수로 함	실제 격리 대상자 지원
지원제외 대상	•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	⇔	• 변동없음 - 단, 어린이집은 삭제	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
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	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	⇔	•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없이 예외 지원	업무 단순화
지원제외 판단 적용	• 가구원(비격리자 포함) 중 제외 대상 포함 시 전체 가구 미지원	⇔	• 입원·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	각부처 중 해당부처만 배제
재택환자 추가지원	•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	⇔	• 폐지	재택치료가 기본 원칙
격리자 정보확인	• 신청자자 제출한 격리통지서 • 보건소 통보 명단	⇔	• 변동없음 - 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조회자료로 같은 가능	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예정
격리일수 인정	• 실제 격리된 일수대로 지원	⇔	• 입원·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'격리시작일'부터 '격리해제일' 까지를 원칙으로 함 *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격리통지 필요	업무 단순화

구분	중전	현행	비고 (사유 등)
실거주 가족 지원	• 배우자,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 등록 분리 시 가구원 포함 지원	↔ • 삭제	실 격리지만 지원 하므로 불필요
해제전검사 미실시자 지원일수	• 당초 격리기간까지만 지원	↔ • 입원·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일수 대로 지원 *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 변경된 일수 대로 지원	업무 단순화
돌봄인력 인원포함	• 돌봄수행인력 요건 등 제한 (가족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등)	↔ •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인 경우 별도 요건 검토 不要	업무 단순화
1개월 초과지원	• 1개월 상한액+1개월 초과일수 일할계산액	↔ •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, 격리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	업무 단순화
신청기한	• 격리해제 후(제한없음)	↔ •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	예산집행 제고, 이월 최소화

I 사업개요

□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4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의5
- 「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증호흡기중후군(MERS)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
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」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-3호(2022.2.14.)

□ 지원조건

- 자치단체 경상보조(국고보조율 50%(단, 특별재난지역 70%))
-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% 집행(구분하여 정산)

II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감염병예방법」)에 따라
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□ 개정지침 적용

- '22. 2. 14. 이후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
- *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·격리 통지서 상 '격리시작일'로 함

(예시) 격리 통보(전화연락, 문서, 문자 등)는 2.13일에 받았으나 입원·격리
통지서 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.14일인 경우
→ 2.14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

☞ '22. 2. 13. 이전 입원·격리 통지된 사람은 중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

□ 지원기준

○ (신청 및 지급 단위)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·지급

- (가구 기준)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

- *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

(예시1)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

- 주민등록표 상 동거 3명(엄마, 아빠, 딸),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(아들)
→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(2건, 엄마 등 3명세대 1건, 아들세대 1건)

(예시2) 외부인(친지 포함)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

- 노인·장애인·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
→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
☞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·격리 통지서(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)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, 목적,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(즉,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)

- (신청자)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(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)

- *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→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
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→ 보호자, 법정대리인이 신청(위탁부모 등 포함)

○ (지원 인원 및 기간)

- (지원인원)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

- * 단, 입원·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

※ 지원제외 대상

① 격리기간 동안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

- *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
② 해외입국 격리자

- * 단, 해외입국 격리기간(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)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

③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

- *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, 환수 조치함

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(근로자)인 경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가~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

-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

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

- ☞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'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'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

※ 제출서류 :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

- (지원기간)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·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(즉,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)

- ☞ 원칙적으로 '22.2.9일 이후 확진자와 그 동거가족의 격리기간은 확진자의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

- * 입원·격리 통지서 외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등재된 격리기간도 격리 통지된 격리기간으로 인정함(시스템 확인 시 입원·격리 통지서 제출, 첨부 생략)
- * 동일가구 확진자 발생을 사유로 격리가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대상 가구원 간의 격리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(입력을 포함함)된 경우, 격리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의 '격리시작일'부터 해제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의 '격리해제일'까지를 해당가구의 지원기간으로 봄

○ 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(지원인원)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누는 금액에 위 격리일수(지원기간)를 곱하여 지원

※ ' 21. 12. 8. 시행한 집중완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폐지
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 >

(단위 : 원/14일 월액)

가구 내 격리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2년 지원액	488,800	826,000	1,066,000	1,304,900	1,541,600	1,773,700

- 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-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- 3) 격리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
- 4)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

- 1건의 격리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(14일 지급액)을 초과할 수 없음(최대 14일분 금액 지급)
 - *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해 격리된 경우 14일까지만 지원
-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(즉,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)하여 해당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, 지원대상 격리기간은 첫 격리자의 격리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봄
 - * 이 경우에도 격리기간을 합산하여 14일을 초과할 경우 14일까지만 지원

(예시) 가구원 확진자①, 격리자②, 수동감시자③
 → 당초 2명 격리(격리통지 기간 3.1~3.7)
 • 격리자②가 3.5일 양성전환(추가 격리통지 기간 3.5~3.11.)
 • 수동감시자③이 3.6일 양성전환(추가 격리통지 기간 3.6~3.12.)
 ⇨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(①, ②, ③)
 지원대상 기간은 3.1~3.12일(12일)

-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또 다른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,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별도 신청·지급
 - * 이 경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음

III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관)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*
 - *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
- (신청방법)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
 -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(확진자, 격리자) 계좌로 제한
 - *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(위탁부모 포함)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
- (신청기간)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(신청 구비서류)
 - 생활지원비 신청서(서식 제1호) 1부
 -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1부
 -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 -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*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
 - 위임장(서식 제2호)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 -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, 해당자에 한함)

□ 처리절차

